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305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305817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2. 10 선고 2020가단108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변론 종결 2021. 8. 19.

판결 선고 2021. 9. 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2. 10. 선고 2020가단108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접수 제1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6.자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이지혜

판사이준영

별지